

## 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

(구)외환은행 (상환청구권이 있는 조건)	(구)하나은행	제정(안)	비고
<p>본인이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매출채권거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p> <p><b>제1조 매출채권거래의 범위</b></p> <p>①이 약정에서 매출채권거래라 함은 본인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수취한 매출채권(어음채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매출채권"이라 합니다.)을 은행이 매입하는 거래를 말합니다.</p> <p>②은행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하여 이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p> <p><b>제2조 유사계약의 협의</b></p> <p>본인이 은행 아닌 제3자와 이 약정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여 은행이 이 약정의 목적달성에 지장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에 하기로 합니다.</p> <p><b>제3조 거래조건</b></p> <p>이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거래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 (거래조건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 표시합니다)</p>	<p>본인이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매출채권거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p> <p><b>제1조 매출채권거래의 범위</b></p> <p>①이 약정에서 매출채권거래라 함은 매출채권(어음채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매입·매출채권의 관리 회수·매출채권금융 기타 이들에 부수하는 회계·전산정보처리·경영상담 등 업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를 말합니다.</p> <p>②은행은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매출채권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하여 이 약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p> <p>③제2항에 의한 거래범위내에서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은 은행이 택하는 것에 한합니다.</p> <p><b>제2조 유사계약의 협의</b></p> <p>본인이 은행 아닌 다른 사람과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여 은행이 이 약정의 목적달성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에 하기로 합니다.</p> <p><b>제3조 거래조건</b></p> <p>이 계약에 의한 매출채권거래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거래조건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v" 표시합니다.)</p>	<p>본인이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매출채권거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p> <p><b>제1조 매출채권거래의 범위</b></p> <p>①이 약정에서 매출채권거래라 함은 매출채권(어음채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매입·매출채권의 관리 회수·매출채권금융 기타 이들에 부수하는 회계·전산정보처리·경영상담 등 업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를 말합니다.</p> <p>②은행은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매출채권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하여 이 약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p> <p>③제2항에 의한 거래범위내에서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은 은행이 택하는 것에 한합니다.</p> <p><b>제2조 유사계약의 협의</b></p> <p>본인이 은행 아닌 다른 사람과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여 은행이 이 약정의 목적달성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에 하기로 합니다.</p> <p><b>제3조 거래조건</b></p> <p>이 계약에 의한 매출채권거래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거래조건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v" 표시합니다.)</p>	

거래과목	<input type="checkbox"/> 팩토링채권 <input type="checkbox"/> 외화팩토링채권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input type="checkbox"/> 개별거래
매입(한도)금액	금 원 미화 달러		
거래기간 개시일	년 월 일	거래기간 만료일	년 월 일
상환청구권 유무	상환청구권이 있는 조건(With recourse)		
채권양도 및 양도대금 지급시기	위 매출채권거래기간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은행앞으로 양도하기로 하며, 그 대금의 지급시기는 매출채권의 매입일로 합니다.		
개별 매입 금액	한도금액이내로 하되, 매출채권총액의 ( )% 이내로 합니다.		
개별 매입 기간	매출채권의 만기일까지 하되, 잔여 만기가 가장 ( )개월 이내인 것으로 합니다.		
이자율 (할인율)	고 정	<input type="checkbox"/> 만기일까지 연 ( )% <input type="checkbox"/> ( ) + ( )%	변 동 <input type="checkbox"/> ( ) + ( )%
지연 배상금율	할인료율에 연체기간별 가산율을 더하여 최고 연 %이내로 적용합니다. 연체기간별 가산율은 연체기간이 ( )개월 미만인 경우 ( )%, ( )개월 이상 ( )개월 미만인 경우 ( )%, ( )개월 이상인 경우 ( )%를 적용합니다.		
이자, 지연 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 외화는 360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자지급시기 /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출채권 매입일에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①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동되는 여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1.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실행일 및 금리변경적용일에 은행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 CD 91일물의 유통수익률, 금융채(AAA) 3개월물, 금융채(AAA) 6개월물, 금융채(AAA) 1년물의 유통 수익률, KORIBOR 3개월물, KORIBOR 6개월물, KORIBOR 1년물, 단기 COFIX, 잔액 기준 COFIX,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 외화대출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 LIBOR 3개월물, LIBOR 6개월물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여신과목	외상매출채권 매입(팩토링)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input type="checkbox"/> 건설거래
여신(한도)금액	금 원 (할부채권 : 금 원)		
여신개시일	년 월 일	여신기간만 료일	년 월 일
수수료율	<input type="checkbox"/>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변동	(연 %)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률은 제3조에 의해 결정된 수수료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단, 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로 합니다. 연체기간이 (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간이 (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간이 ( )개월 초과인 경우 : 연 %		
수수료 및 지연 배상금의 계 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매출채권 양도 및 양도대전 지급시기	<input type="checkbox"/> 위 여신거래기간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은행앞으로 양도하기로 하며, 그 대전의 지급시기는 제9조에 따라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의 회수금으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수료의 지급 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출채권의 양도시에 매출채권의 만기일까지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최초에는 매출채권의 양도시에, 그 후의 수수료는 지급한 수수료의 계산 최종일에 ( )개월 단위로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여신과목	외상매출채권 매입(팩토링)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input type="checkbox"/> 건설거래
여신(한도)금액	금 원 (할부채권 : 금 원)		
여신개시일	년 월 일	여신기간만 료일	년 월 일
수수료율	<input type="checkbox"/> 징구	<input type="checkbox"/>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 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미징구	<input type="checkbox"/> 변동	(연 %)
상환청구권 유무	<input type="checkbox"/> 상환청구권이 있는 조건(with recourse) <input type="checkbox"/> 상환청구권이 없는 조건(without recourse)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률은 제3조에 의해 결정된 수수료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단, 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로 합니다. 연체기간이 (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간이 (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간이 ( )개월 초과인 경우 : 연 %		
수수료 및 지연 배상금의 계 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매출채권 양도 및 양도대전 지급시기	<input type="checkbox"/> 위 여신거래기간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은행앞으로 양도하기로 하며, 그 대전의 지급시기는 제9조에 따라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의 회수금으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수료의 지급 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출채권의 양도시에 매출채권의 만기일까지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최초에는 매출채권의 양도시에, 그 후의 수수료는 지급한 수수료의 계산 최종일에 ( )개월 단위로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징구/미징구 표시 명확화

-상환청구권 유/무를 구별하여 약정

<p>2. 각각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의 변경은 아래의 변동주기와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p> <p>가. CD 91일물의 유통수익률은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업일 한국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유통수익률을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개월 마다 변경합니다.</p> <p>나. 금융채(AAA) 3개월물, 금융채(AAA) 6개월물, 금융채(AAA) 1년물의 유통수익률은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 부터 매 3개월, 6개월, 1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업일 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가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AAA) 유통수익률의 단순평균값을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개월, 6개월, 1년마다 변경 합니다.</p> <p>다. KORIBOR 3개월물, KORIBOR 6개월물, KORIBOR 1년물은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 3개월,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업일 연합인포맥스가 고시하는 기간별 KORIBOR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변경합니다.</p> <p>라. 단기 COFIX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단기 COFIX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개월 마다 변경합니다.</p> <p>마. 잔액 기준 COFIX,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기간별 잔액기준 COFIX, 기간별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6개월, 12개월마다 변경 합니다.</p> <p>바. LIBOR 1개월물, LIBOR 3개월물, LIBOR 6개월물은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 1개월, 3개월, 6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업일 영국 런던 오전 11시 IBA(ICE Benchmark</p>			
--	--	--	--

Administration)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uters, Telerate,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 받은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1개월, 3개월, 6개월마다 변경합니다.

② 고정금리대출에 적용하는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자본 시장에서 유통되는 시장상품 중 금리만기일과 일치 하는 대표적인 상품의 시장유통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산출하여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1. 원화대출의 경우

가. 금리만기별 기준상품 유통수익률 등 : CALL 금리, CD유통수익률, 금융채(AAA) 유통수익률, 국고채 유통수익률

나. 산출방법 : 여신실행일의 직전영업일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은행,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 고시한 금리 만기별 기준상품 유통수익률 등을 적용하며, 유통수익률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 보간법 : 기준상품의 시장 유통수익률이 없는 만기구간은 유통수익률이 있는 상하만기 유통수익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

2. 외화대출의 경우

가. 기간별, 통화별 LIBOR

나. 산출방법 : 여신실행일의 직전영업일 영국 런던 오전 11시 IBA(ICE Benchmark Administration)가 고시 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uters, Telerate,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 받은 기간별, 통화별 LIBOR를 적용하며, LIBOR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③ 내국수입유산스 LIBOR는 여신실행일 직전영업일 영국 런던 오전 11시 IBA(ICE Benchmark Administration)가 고시하는 1월, 2월, 3월, 6월의 LIBOR를 기준으로 여신기간(해당일수)의 전·후 구간에 대한 LIBOR를 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적용

<p>하기로 합니다.</p> <p><b>제6조 감액·정지</b></p> <p>① 한도거래 및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아야 합니다.</p> <p>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구체적인 사유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나. 외환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 조절대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라.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p> <p>2.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의 구체적인 사유  가.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p>	<p><b>제4조 수수료</b></p> <p>본인은 이약정에 의한 매출채권거래에 대한 보수로서 제7조에 의하여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수수료지급시기에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수수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 및 계산방법에 따라 수수료 지급기일 익일부터 이행일까지 그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b>제5조 감액·정지</b></p> <p>① <u>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본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3조의 한도액 및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한도액을 줄이거나 매출채권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u></p> <p>② <u>제1항에 의한 감액의 경우에는 감액으로 말미암아 한도를 초과한 매출채권 양도분은 곧 반환받거나 환매하고, 한도를 초과한 매출채권 대출분은 곧 갚기로 합니다.</u></p> <p>③ <u>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u></p>	<p><b>제4조 수수료</b></p> <p>본인은 이약정에 의한 매출채권거래에 대한 보수로서 제7조에 의하여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수수료지급시기에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수수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 및 계산방법에 따라 수수료 지급기일 익일부터 이행일까지 그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b>제5조 감액·정지</b></p> <p>① <u>한도거래 및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 초과 금액은 곧 갚아야 합니다.</u></p> <p>1. <u>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구체적인 사유</u>  가. <u>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u>  나. <u>외환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u>  다. <u>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 조절대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u>  라. <u>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u></p> <p>2. <u>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의 구체적인 사유</u>  가. <u>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u></p>	<p>-감액/정지 조항 구체화</p>
--	---	--	--------------------------

<p>나. 경영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 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p> <p>라. 신문,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본인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p> <p>마. 본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p> <p>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사.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없어져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없애기로 합니다.</p> <p><b>제10조 인지세의 부담</b></p> <p>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p> <p>②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4조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p> <p><b>제7조 매출채권의 양도 및 매입</b></p> <p>①본인은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이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거래로서 은행에게 양도합니다.</p> <p>②제1항의 경우 매출채권(어음채권 제외)을 양도한 때에는 본인이 매출채권의 채무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서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어음채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본인이 은행앞으로 배서하여 교부합니다.</p>	<p><b>6조 인지세의 부담</b></p> <p>①이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p> <p>②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p> <p><b>제7조 매출채권의 양도</b></p> <p>①본인은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이 약정에 의한 매출거래로서 은행에게 양도합니다.</p> <p>②제1항의 경우 매출채권(어음채권 제외)을 양도한 때에는 본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서를 받아 확정일자를 얻어 은행에 제출하고 어음채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본인이 은행앞으로 배서하여 교부합니다.</p>	<p><u>나. 경영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u> <u>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u></p> <p><u>라. 신문,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본인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u></p> <p><u>마. 본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u></p> <p><u>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u></p> <p><u>사.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u></p> <p><u>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u></p> <p><b>6조 인지세의 부담</b></p> <p>①이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p> <p>②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p> <p><b>제7조 매출채권의 양도</b></p> <p>①본인은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이 약정에 의한 매출거래로서 은행에게 양도합니다.</p> <p>②제1항의 경우 매출채권(어음채권 제외)을 양도한 때에는 본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서를 받아 확정일자를 얻어 은행에 제출하고 어음채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본인이 은행앞으로 배서하여 교부합니다.</p>	
---	---	--	--

<p>니다.</p> <p>③은행은 양도받은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있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하고, 동 매입대금은 제3조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매출채권 매입일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p> <p><b>제8조 매출채권의 관리·회수 및 협력</b></p> <p>①본인은 제7조에 의하여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은행은 양도 받은 매출채권을 본인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p> <p>②은행의 매출채권 회수에 있어서 지급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은 가능한 방법에 의하여 그 회수의 실현에 협력합니다.</p>	<p>③제2항의 채무자의 채권양도승낙서에 관하여는 은행이 그 제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은행은 언제든지 그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또 본인은 은행의 승인을 얻어 채무자 앞으로 배당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고 그 원본을 제출할 수 있기로 합니다.</p> <p><u>④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에 따라 제1항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있는 매입방식 또는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u></p> <p><b>제8조 매출채권의 회수 및 협력</b></p> <p>①은행은 제7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을 그 권리자로서 직접 관리 회수합니다. 그러나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은행이 채권양도승낙서 제출을 유예한 경우에는 본인이 은행을 대리하여 매출채권을 관리 회수하고 회수한 대전을 곧 은행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p> <p>②제1항의 매출채권 회수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은 가능한 모든 방법에 의하여 그 회수의 실현에 협력합니다.</p> <p><b>제9조 매출채권대전의 지급시기</b></p> <p>본인은 은행이 제7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의 대전을 <u>한나은행</u>이 정한 계산방법에 의한 매출채권 평균 만기일에 지급받기로 합니다.</p> <p><b>제10조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양도대전 지급</b></p> <p>은행이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사유로 말미암아 각기 상환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거절된 때에는 본인은 은행으로부터 그 매출채권 대전을 지급받습니다.</p>	<p>③제2항의 채무자의 채권양도승낙서에 관하여는 은행이 그 제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은행은 언제든지 그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또 본인은 은행의 승인을 얻어 채무자 앞으로 배당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고 그 원본을 제출할 수 있기로 합니다.</p> <p><u>④은행은 제1항의 매출채권을 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청구권 있는 매입방식 또는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하기로 합니다.</u></p> <p><b>제8조 매출채권의 회수 및 협력</b></p> <p>①은행은 제7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을 그 권리자로서 직접 관리 회수합니다. 그러나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은행이 채권양도승낙서 제출을 유예한 경우에는 본인이 은행을 대리하여 매출채권을 관리 회수하고 회수한 대전을 곧 은행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p> <p>②제1항의 매출채권 회수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은 가능한 모든 방법에 의하여 그 회수의 실현에 협력합니다.</p> <p><b>제9조 매출채권대전의 지급시기</b></p> <p>본인은 은행이 제7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의 대전을 <u>은행</u>이 정한 계산방법에 의한 매출채권 평균 만기일에 지급받기로 합니다.</p> <p><b>제10조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양도대전 지급</b></p> <p>은행이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사유로 말미암아 각기 상환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거절된 때에는 본인은 은행으로부터 그 매출채권 대전을 지급받습니다.</p>	<p>-상환청구권 유/무를 구별하여 매입으로 변경</p>
--	--	--	---------------------------------

<p><b>제9조 매출채권의 환매 등</b></p> <p>①은행이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매입한 매출채권이 각기 상환 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당연히, 또 지급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그 지급거절 원인이 지급인의 상환능력에 관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본인은 곧 그 매출채권 및 그와 지급인이 같은 다른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집니다.</p> <p>② 제1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든 매출채권에 대하여 즉시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집니다.</p> <p>③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환매의무를 진 경우 환매의무발생일 현재 미회수된 약정서 제3조의 거래금액(매출채권액면금액)을 곧 상환하기로 하며,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환매의무 발생일 익일부터 이행일까지의 지체일수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④본인이 제3항에 따라 환매의무를 이행한 경우 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본인앞으로 반환하고 그 매출채권을 재양도하는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이 경우 매출채권 재양도에 관한 지급인앞 통지는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은행이 합니다.</p> <p>⑤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을 집니다.</p>	<p><b>제11조 매출채권의 환매</b></p> <p>①은행이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상품의 수량·품질·가격 등 상거래관계로 말미암은 사유에 의하여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당연히, 또 지급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본인은 곧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집니다.</p> <p>②은행이 제7조 제4항에 상환청구권 있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각기 상환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그 지급거절 원인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본인은 곧 그 매출채권 및 그와 채무자가 같은 다른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집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본인이 환매의무를 진 경우에는 은행은 그 매출채권을 <b>본인의</b> 앞으로 재양도하는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b>이 경우</b> 매출채권 재양도에 관한 채무자앞 통지는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은행이 합니다.</p> <p>④본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매의무를 진 경우 환매의무발생 이전에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매출채권대전을 곧 상환하기로 하며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환매의무 발생일 익일부터 이행일까지의 지체일수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⑤제1항 제2항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을 집니다.</p> <p><b>제12조 매출채권대출</b></p> <p>①제9조의 양도대전 지급시기 도래전에 본인이 용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조건 및 기타 은행이 따로 정한 방법에</p>	<p><b>제11조 매출채권의 환매</b></p> <p>①은행이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상품의 수량·품질·가격 등 상거래관계로 말미암은 사유에 의하여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당연히, 또 지급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본인은 곧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집니다.</p> <p>②은행이 제7조 제4항에 <b>의하여</b> 상환청구권 있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각기 상환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그 지급거절 원인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본인은 곧 그 매출채권 및 그와 채무자가 같은 다른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집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본인이 환매의무를 진 경우에는 은행은 그 매출채권을 <b>본인</b> 앞으로 재양도하는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b>이 경우</b> 매출채권 재양도에 관한 채무자앞 통지는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은행이 합니다.</p> <p>④본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매의무를 진 경우 환매의무발생 이전에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매출채권대전을 곧 상환하기로 하며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환매의무 발생일 익일부터 이행일까지의 지체일수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⑤제1항 제2항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을 집니다.</p> <p><b>제12조 매출채권대출</b></p> <p>①제9조의 양도대전 지급시기 도래전에 본인이 용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조건 및 기타 은행이 따로 정한 방법에</p>	<p>- 오타 수정</p> <p>- 오타 수정</p>
--	---	---	-------------------------------



따라 은행으로부터 매출채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의한 대출의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 (거래조건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V" 표시합니다)

여신과목	외상매출채권대출(팩토링)	
대출금액	제3조에서 정한 한도이내로 하되,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 총액의 ( )% 이내로 합니다.	
대출기간	제9조에 의한 평균만기일까지로 하되, 최장 ( )개월 이내로 합니다.	
이자율 지연배상 금률	<input type="checkbox"/> 고정	<input type="checkbox"/> 대출만기일까지 연 % (추가)
	<input type="checkbox"/> 변동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지연배상금률은 제12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단, 최고지연배상금율은 연 %로 합니다. 연체기간이 (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간이 (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간이 ( )개월 초과인 경우 : 연 %		
이자 및 지연배상 금의 계 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대출실행 방법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신청이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대출만기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대전 및 회수금으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이자의 지급시기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 는 대출실행일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에 선지급합니다.	

따라 은행으로부터 매출채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의한 대출의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 (거래조건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V" 표시합니다)

여신과목	외상매출채권대출(팩토링)	
대출금액	제3조에서 정한 한도이내로 하되,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 총액의 ( )% 이내로 합니다.	
대출기간	제9조에 의한 평균만기일까지로 하되, 최장 ( )개월 이내로 합니다.	
이자율 지연배상 금률	<input type="checkbox"/> 고정	<input type="checkbox"/> 대출만기일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 ( )%
	<input type="checkbox"/> 변동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 ( )% <input type="checkbox"/> [변동주기 : ( )개월]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지연배상금률은 제12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단, 최고지연배상금율은 연 %로 합니다. 연체기간이 (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간이 (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간이 ( )개월 초과인 경우 : 연 %		
이자 및 지연배상 금의 계 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대출실행 방법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신청이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대출만기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대전 및 회수금으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이자의 지급시기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 는 대출실행일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에 선지급합니다.	

- 항목 추가

- 항목 추가

<p><b>제4조 지연배상금</b></p> <p>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② 여신기한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포함)에는 채무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및 방법</p> <p><input type="checkbox"/>대출실행일에 만기일까지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최초이자 는 대출실행이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기타 ( )</p> <p>※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③ 본인은 제2항에서 정한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및 방법</p> <p><input type="checkbox"/>대출실행일에 만기일까지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최초이자 는 대출실행이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기타 ( )</p> <p>※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③ 본인은 제2항에서 정한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u>④ 제4항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u></p> <p><u>1.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 일물 CD유통수익률, AAA 등급 6 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AAA 등급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단기 코픽스금리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 외화대출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 LIBOR 3개월물, LIBOR 6개월물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u></p> <p><u>2. 각각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는 아래의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u></p> <p><u>가. 91 일물 CD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u></p> <p><u>나. 6 개월물 금융채 또는 1 년물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u></p> <p><u>다. 단기코픽스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금리</u></p> <p><u>라. LIBOR 1개월물 또는 LIBOR 3개월물 또는 LIBOR 6개월물은 IBA(ICE Benchmark Administration)가 고시하는 금리</u></p> <p><u>⑤ 제4항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제2항에</u></p>	<p>-기준 금리에 대한 설명 조항 추가 필요</p>
--	--	---	-------------------------------

<p><b>제11조 통지의무</b> 본인은 은행에게 양도한 매출채권의 지급인의 재산·경영·업황·기타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은행앞으로 이를 통지합니다.</p> <p><b>제12조 양도·질권설정의 금지</b> 본인은 은행의 사전의 서면승낙없이 이 약정상의 어떠한 권리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지 아니합니다.</p>	<p><b>제13조 대출금의 변제 등</b> ①본인이 제12조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매출채권에 관하여 제11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환매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은 곧 은행에 대하여 은행 소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출금을 <u>갚기로</u> 하고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재양도를 받습니다. ②제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발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본인은 곧 은행 소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모든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매출채권의 재양도를 받습니다. ③<b>본인</b>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변제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날로부터 이행일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b>제14조 통지의무</b> 본인은 은행에게 양도한 매출채권의 채무자의 재산·경영·업황·기타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칠 상황에 관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은행앞으로 이를 통지합니다.</p> <p><b>제15조 양도·질권설정의 금지</b> 본인은 은행의 사전의 서면승낙없이 이 약정상의 어떠한 권리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지 아니합니다.</p>	<p><u>서 정한 변동주기마다 최초 대출상당일(최초 대출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말일) 직전 영업일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2항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u></p> <p><b>제13조 대출금의 변제 등</b> ①본인이 제12조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매출채권에 관하여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매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은 곧 은행에 대하여 은행 소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출금을 <u>갚기로</u> 하고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재양도를 받습니다. ②제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발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본인은 곧 은행 소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모든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매출채권의 재양도를 받습니다. ③<b>본인이</b>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변제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날로부터 이행일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b>제14조 통지의무</b> 본인은 은행에게 양도한 매출채권의 채무자의 재산·경영·업황·기타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칠 상황에 관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은행앞으로 이를 통지합니다.</p> <p><b>제15조 양도·질권설정의 금지</b> 본인은 은행의 사전의 서면승낙없이 이 약정상의 어떠한 권리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지 아니합니다.</p>	<p>-오타수정</p>
---	--	--	--------------

**제13조 담보권의 이전**

본인은 은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제7조에 의하여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인적담보(근담보권을 포함합니다)를 은행앞으로 이전하고 은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제14조 환매의무 이행에 필요한 자력 유지의무 등**

①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20 .	20 .	20 .	20 .
부 채 비 율	%				
자 기 자 본 비 율	%				
( )비율	%				
( )비율	%				

②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 1.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 2.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 3.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 4.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 5.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제16조 담보권의 이전**

본인은 은행의 청구있는 때에는 곧 제7조에 의하여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인적 담보(근담보권을 포함합니다)를 은행 앞으로 이전하고 은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제17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20 .	20 .	20 .	20 .
부 채 비 율	%				
자 기 자 본 비 율	%				
( )비율	%				
( )비율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제16조 담보권의 이전**

본인은 은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곧 제7조에 의하여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인적 담보(근담보권을 포함합니다)를 은행 앞으로 이전하고 은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제17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20 .	20 .	20 .	20 .
부 채 비 율	%				
자 기 자 본 비 율	%				
( )비율	%				
( )비율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오타수정

<p>6.자산담보부증권 발행을 위한 중요자산의 양도</p> <p>③본인은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은행이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p> <p>1.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p> <p>2.지배주주의 출자</p> <p>3.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 또는 각 목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p> <p><b>제15조 자료의 제출 등</b></p> <p>①본인은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p> <p>1.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p> <p>2.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p> <p>3.매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p> <p>4.수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p> <p>②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p>	<p><u>&lt;신설&gt;</u></p> <p>③ 본인은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p> <p>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p> <p>2. 지배주주의 출자</p> <p>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p> <p><b>제18조 자료의 제출 등</b></p> <p>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p> <p>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p> <p>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p> <p>3. 매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u>법인등기부등본</u>,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p> <p>4. 수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p> <p>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p>	<p><u>6.자산담보부증권 발행을 위한 중요자산의 양도</u></p> <p>③ 본인은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p> <p>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p> <p>2. 지배주주의 출자</p> <p>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p> <p><b>제18조 자료의 제출 등</b></p> <p>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p> <p>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p> <p>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p> <p>3. 매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u>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u>,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p> <p>4. 수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p> <p>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p>	<p>-구외환 조항 반영</p> <p>-명칭변경반영</p>
---	--	---	----------------------------------

<p>1.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p> <p><b>제17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준용</b></p> <p>①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제4조(비용의 부담)·제6조(담보)·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제10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등)·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제13조(은행의 변제 등의 총당지정)·제14조(채무자의 상계총당지정)·제15조(위험부담·면책조항)·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등)·제17조(자료의 성실작성의무)·제18조(통지의 효력)·제19조(회보와 조사)·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제21조(이행장소·준거법)·제22조(약관변경)·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를 준용할 것을 승인합니다.</p> <p>②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상 채무자는 본인,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의 채무는 이 약정에 의한 본인의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합니다.</p> <p><b>제5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b></p> <p>①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p> <p>② 적금대출 및 상호부금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p> <p><b>제16조 상환통화 및 환율</b></p>	<p>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p> <p><b>제19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준용</b></p> <p>①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거래에 관하여도 은행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제4조(비용의 부담)·제6조(담보)·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제10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제13조(은행의 변제 등의 총당지정) ·제14조(채무자의 상계총당지정) ·제15조(위험부담·면책조항)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등) ·제17조(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제18조(통지의 효력) ·제19조(회보와 조사등)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등) ·제21조(이행장소·준거법)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를 준용할 것을 승인합니다.</p> <p>②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상 채무자는 본인,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의 채무는 이 약정에 의한 본인의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합니다.</p>	<p>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p> <p><b>제19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준용</b></p> <p>①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거래에 관하여도 은행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제4조(비용의 부담)·제6조(담보)·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제10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제13조(은행의 변제 등의 총당지정) ·제14조(채무자의 상계총당지정) ·제15조(위험부담·면책조항)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등) ·제17조(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제18조(통지의 효력) ·제19조(회보와 조사등)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등) ·제21조(이행장소·준거법)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를 준용할 것을 승인합니다.</p> <p>②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상 채무자는 본인,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의 채무는 이 약정에 의한 본인의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합니다.</p>	
--	---	---	--

외화대출의 원리금은 차용통화 또는 원화로 상환할 수 있으며, 원화로 상환하는 경우 적용환율은 상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8조 보험계약**

① 담보제공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은행이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위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증권을 은행에 교부하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니다

② 담보제공자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은행에 통지하며, 은행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제1항과 같은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③ 담보제공자가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은행이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담보제공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담보제공자는 본인과 연대하여 은행이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비용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은행이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은행은 그 수령금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19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①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이 본인의 은행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

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에 대비한 은행의 청구에 따라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하기로 합니다.

#### **제20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이 동의를 한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은행은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 **제21조 회보와 조사**

① 담보제공자는 담보목적물의 상황에 관하여 은행으로 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곧 회보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합니다.

② 특정저당권의 경우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은행은 저당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음과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것을 담보제공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 **제22조 절차이행과 비용부담**

① 담보제공자는 담보권의 설정·보전·변경·경정·이전·이관·말소 등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여야 할 때에는 은행의 청구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에 드는 비용이나 담보목적물의 조사·점유·보전·관리·처분 및 담보권의 보전과 행사 등에 관한 비용은 계약서상 은행과 담보제공자 및 본인과 협의하여 비용부담의 주체를 따로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제공자가 본인과 연대하여 부담하고, 은행이 대신 지급한 때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이를 곧 갚기로 합니다.

**제23조 채권추심·변제 총당**

은행이 양수한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은행은 그 수령금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총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24조 담보가치의 유지**

양도인은 공사의 부실·납품의 불합격 등 양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물론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은행이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은행에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25조 협의사항**

이 약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제26조 기타 특약사항**

--

본인의 자서확	소속		직위		성명 (인)
------------	----	--	----	--	-----------

**제20조 협의사항**

이 약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제20조 협의사항**

이 약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제21조 기타 특약사항**

--

-특약사항 조항  
추가

인			
<p>본인은 이 약정서 사본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p> <p>- 약정내용과 관련한 거래취급 내용(신규,연장)의 서면통지 생략 여부 : <input type="checkbox"/> 생략함 <input type="checkbox"/> 생략하지 않음</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인 (인)</p>	<p>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 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p> <p style="text-align: right;">(인)</p>	<p>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 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p> <p style="text-align: right;">(인)</p>	
<p>수입인지 첨부란</p>			